



근로자의 권리 알아보기!

근로자의 일할 권리에 대한 정보

미국 법무부 인권국에는 고용주가 미국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출신 국가 또는 체류 상태를 근거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 특정 근로자를 출신 국가(국적 차별)에 따라서 또는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이민자 신분 차별)에 따라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법은 차별하려는 의도로 취업 허가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하거나 유효한 취업 허가 서류를 거부하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고용주의 차별 행동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고용주의 행동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국적이나 체류 상태를 근거로 차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 o 특정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 o 특정 근로자에게 I-9 양식 작성을 위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한다.
- o 유효한 취업 허가 서류를 받지 않는다.
- o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다.
- o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과 망명자의 고용을 거부한다.
- o 미국 시민만 고용한다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외).
- o 채용하기 전에 특정 근로자에게 취업 허가 문서를 요구한다.
- o 취업 허가가 있는 근로자를 과거에 불법 체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다른 배경에 대해 거짓말을 했음에도 해고하지 않는다.

E-Verify가 무엇인가?

E-Verify는 피고용주가 근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가 사용하는 전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사용된다. E-Verify는 절대로 취업 지원자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고용주가 다음과 같이 E-Verify를 사용할 때 국적 또는 체류 상태를 근거로 차별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 o 신규 채용 직원 중 일부만을 상대로 E-Verify를 사용한다.
- o 기존 직원 중 일부만을 상대로 E-Verify를 사용한다 (E-Verify는 일반적으로 채용 시에만 사용해야 한다).
- o 잠정 미확인 (TNCs) 통지를 가진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잠정 미확인을 수정하는 동안 업무 시작 날짜를 지연시킨다.
- o 특정 근로자에게 E-Verify의 "자가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자신을 검색하도록 요청한다.

자기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이러한 유형의 차별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이민 관련 불공정 고용 관행 특별 심의회 사무소 (OSC)의 근로자 상담전화 **1-800-255-7688** (오전 9시 - 오후 5시, 동부 표준시)로 전화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TDD: 1-800-237-2515). 원하는 경우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통역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상담전화에 연락한 고용인을 상대로 고용주가 위협 또는 보복 행위를 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로 연락하거나 웹 사이트 <http://www.justice.gov/crt/about/osc>를 방문한다.